

석유부과금의 납부와 환급신청



배도환

〈석유개발공사 자금관리처 일반운자부장〉

1. 머리말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항목인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은 '95년 1월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경우와 등유 및 고급휘발유를 판매하는 경우에 부과 징수하기 시작하여, '97년 1월부터는 수입석유중 HSK CODE 분류상 56개 품목에 대하여 1배럴당 1.7달러·등유판매시는 1/당 20원·고급휘발유 판매시는 1/당 90원을 부과 징수하고 있다.

또한 일정한 환급대상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을 환급하여 주고 있는 데, 부과금징수금액과 환급금액이 적지 않아 개정된 석유부과금 제도에 관하여 관련 해당 업체의 관심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의 근거법인 석유사업법이 '97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동 업무관련 고시와 운영요령도 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석유부과금을 납부하고 환급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95년도부터 시행된 관련규정과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 부과금의 납부 및 환급신청시의 주요 주의사항과 석유부과금 제도의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석유부과금의 주요 개정사항

(1) 관련법규 등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과 관련된 법규 등은 석유사업법('96.12.29, 법률 제5092호, 전문개정, '97.1.1시행) 석유사업법시행령('96.12.31, 대통령령 제15230호, 전문개정), 석유사업법 시행규칙('96.12.31, 통상산업부령 제51호, 전문개정)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및 환급에 관한 고시('96.12.31,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461호, 전문개정),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 징수 및 환급요령('97.1.10, 통상산업부 승인)이 있으며, 그 개정사항의 시행일은 모두 '97년 1월 1일로 되어 있다.

(2) 주요 개정내용

'95년 1월부터 시행된 석유부과금의 징수 등의 관련법규 등을 2년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전과 달리 '97년 1월부터 개정시행되는 주요 내용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보았다.

-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수입석유부과금 대상을 HSK CODE 분류로 56개품목 확정, 30배럴이하 수입건 부과금면제, 통관시 세관장의 납부확인서 확인 의무 명시, 수혜자 위주의 환급대상 조정,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환급대상범위 확대, 신규 수출품목에 대한 소요량 소급인정, 환급신청의 수시접수, 가산금의 부담경감, 독촉장 양식확정, 징수순위와 결손처분사유와 절차 등이 있다.
- 투명성 확보사항으로는 부과금 징수물량 산정기준 명시, 체납시 통관일의 외환은행 환율 적용, 환급신청 금액과 환급금액의 차액발생시 그 사유 통보 등이 있다.
- 업무의 효율성 확보사항으로는 5개고시와 2개요령을 각각 하나의 고시와 요령으로 통합, 부과금확인서 발급대상 신설, 환율적용의 탄력적 운영, 부과금 단가의 전전월 실적기준 적용, 부과금 단가와 환급율의 각 업체별 심사와 통보, 수입신고필증 한번 제출 등이 있다.

(3) 부과금납부등의 세부내용

가. 부과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 부과금 납부대상 : 석유를 수입하는 경우는 HSK CODE 분류로 56개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B/L 기준 30배럴 이하와 부과금면제 비축량으로 비축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징수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 부과금 납부의무자 : 석유수입업자의 등록자와 운할유·운할기유 및 아스팔트의 수입업자인 등록면제자도 포함한다.
- 부과금 납부확인 : 세관장의 부과금 납부확인 절차 규정, 부과금 확인서에 수입신고 번호와 환율 기재란 신설, 부과금확인서 발급대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 환율적용의 탄력적 운용 : 외환은행의 환율도 인정함으로써 수납은행의 환율이 외환은행의 환율과 같을 때에는 환율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물량산정기준 : 신고필증상의 수량·증량의 순으로 하고, B/L물량납부도 인정된다.
- 징수순위 : 체납처분비·가산금·부과금의 순, 2건 이상 체납시는 최초의 체납액부터 징수한다.

나. 부과금의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

- 징수유예의 납부기한 : 종전에는 징수유예 기간으로 규정된 것이 납부기한으로 개정되었다.
- 담보로 제공되는 약속어음 관련 은행확인 : 거래은행의 명관 및 거래인감에는 거래은행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다.
- 징수유예금액과 환급금액과의 상계규정 삭제 : 징수유예된 부과금은 징수유예분의 납부기한인 통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 부과금의 체납에 관한 사항

- 가산금의 경감 : 체납시 종전에는 부과금의 5% 가산금과 1월 경과시마다 1.2%의 증가산금을 징수하였으나, 가산금 5%만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 체납사실통보 규정신설 : 체납된 때에는 세입징수관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결손처분의 사유명시와 통산부장관의 승인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총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

할 때 등에는 통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손처분할 수 있다.

라. 부과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

- 환급의 수시신청 : 환급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다.
- 수혜자에 직접환급 : 공업원료용인 경우, 원료사용자에게 환급하던 것을 공급자에게 환급한다. (예, 석유화학업체 → 정유업체)
- 환급대상 범위확대 : 발전용으로 수입LPG를 공급하는 경우, 프로세스와 전기절연유를 공급하는 경우, 프로세스유와 전기절연유를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여 공산품을 수출하는 경우 및 유틸리티(조유포함)를 수출용 유동파라핀의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환급대상이 된다.
- 부과금단가의 전전월 실적기준 : 당해월 실적산정에 따른 업무부담의 경감과 조기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 신규 수출품목의 기준 소요량 소급적용 : 소요량을 1년전까지 소급인정함으로써 수출지원 정책에 부합되도록 되어 있다.
- 환급관련 자료의 개별통보 : 부과금단가와 환급율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각 업체에 해당사항만 통보한다. 종전에는 모든업체의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통보하였다.
- 납부실적 제출시는 수입신고 필증 제출생략 : 종전에는 부과금 확인서 발급시와 납부실적 제출시 2번 제출하였다.
- 환급신청금액과 환급금액의 차액사유 통보 : 석유부과금 환급통지서에 기재하여 통보한다.
- 과다환급시의 가산금 경감 : 부당하게 과다환급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은 연 17%의 이율을 적용하여 일괄계산한다.

마. 기타

- 5개고시의 통합 : 수입석유부과금 징수고시·징수제외고시·판매부과금 징수고시·징수유예고시 및 환급고시가 하나의 고시로 통합되었다.
- 2개 요령의 통합 : 징수요령 및 환급요령이 하나의 요령으로 통합되었다.
- 용어정리 및 기타 미비점 보완 : 면장 → 신고필증, 구좌번호 → 계좌번호 등의 용어정리와 법정공휴일의 납부기한 정리, 각종 서식이 재정비되었다.

3. 석유부과금의 납부와 환급신청시의 주요 주의사항

(1) 부과금 납부시의 주의사항

- 부과금의 납부·징수제외·징수유예 대상확인
 - 수입석유의 부과금 징수대상은 HSK CODE분류 중 56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다. 종전에는 석유수입시 모두 징수대상으로 하였고, 그중 유틸리티는 용도와 석유제품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는 석유사업법상의 석유제품으로 보지 않았다.(규칙 제30조)
 - 징수제외 대상은 부과금면제 비축량으로 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종전에는 통산부고시 제1994-4호로 고시하던 4개 석유제품을 수입석유의 부과금 징수대상 품명란에서 ()로 표시하고 있다.(시행령 제23조, 규칙 제30조, 제31조)
 - 징수유예대상 중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은 예시가 아닌 가스오일 등 4개 품목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외 유사품목은 징수유예되지 않는다.(고시 제5조)
- 징수제외 물량의 부과금 납부요건과 납부기한 확인 : 부과금면제 비축량 등의 사유로 부과금 징수대상

에서 제외되었던 석유수입업자 등이 당해 석유를 징수제의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석유를 판매 또는 사용한 날까지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른 석유비축 의무자로부터 매입차용한 경우에는 통산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3조, 제25조)

- 수입신고필증과 B/L의 물량비교 : 석유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 물량산정은 수입신고 물량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B/L상의 순물량으로 납부한 경우도 인정하고 있다. 정유사는 현재 B/L물량보다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부과금이 납부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시 제3조)
- 환율표의 제출생략 : 세입징수관은 외환은행의 환율을 적용하여 세입징수결의를 할 수 있으므로 수납은행의 적용환율이 외환은행보다 낮은 경우만 그 확인자료로 제출하면 된다.(고시 제4조)
- 통관전에 부과금납부 또는 징수유예의 확인을 받을 것 : 통관후에 부과금을 납부하는 것과 징수유예대상을 징수유예 받지 않고 통관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납부하는 것은 체납요건에 해당되므로 주의를 요한다.(고시 제10조, 제15조, 제18조)
- 부과금 납부 등 확인서의 발급신청과 세관장에 제출 : 부과금확인서는 납부·징수면제 또는 납부유예의 모든 경우에 발급받아야 하며, 석유를 수입통관하기 전에 부과금 확인서 또는 영수증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이를 확인후 통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5조, 규칙 제32조)
- 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의 5% 적용 : 부과금이 체납된 경우, 종전에는 체납된 부과금의 5% 가산금과 1월 경과시마다 1.2%의 증가산금을 징수하던 것을 증가산금 조항을 삭제하여 가산금 5%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시행령 제24조)
- 법정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적용 : 부과금의 납부 기한에 관한 사항으로 징수유예의 확인에도 적용된

다.(고시 제10조)

(2) 부과금 환급신청시의 주의사항

- 환급대상 석유제품의 확인 : 환급받을 수 있는 석유제품은 HSK CODE 분류상 56개 품목에 한정되어 있다.(고시 제21조)
- 환급합의증서 제출 : 수출을 위탁한 자가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수출한 자와 합의한 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합의서를 제출한 후 환급받도록 하여야겠다.(고시 제22조)
- 신규 수출품목 지원근거 마련 : 신규로 수출한 경우에는 소요량증명서 발급일 이전 1년부터 그 소요량을 소급하여 적용한다.(고시 제26조)
- 수입신고필증 한번 제출 : 종전에는 납부확인서 발급신청시와 환급관련 부과금 납부 실적 제출시 2번 제출하였으나, 납부확인서 발급신청시 또는 징수유예분에 대한 별도제출로 한번만 제출하면 된다.(요령 제4조, 제8조)
- 부과금단가와 환급을 자료의 조기 제출 : 종전에는 모든 관련 업체의 자료를 일괄 심사후 일괄 통보하던 것을 각 업체별로 개별적 심사후 개별적으로 통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기환급을 위해서는 일찍 자료를 제출하여 일찍 통보받아야겠다.(요령 제9조, 제10조)
- 환급신청의 수시접수가능 : 종전에는 환급신청일을 매월 7일, 17일, 27일로 하여 월 3회만 접수하였으나, 환급신청 마감일을 매월 7일, 17일, 27일로 하였으므로 수시접수가 가능하여 접수와 동시에 심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환급신청 마감일을 고시상의 신청서 접수일로 하였으므로 8일~16일 사이 접수분을 17일 이후 환급이 가능하여 종전보다 환급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종전에는 17일 접수하여 그날 이후 심사하였으므로 환급이 17일~20일에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향후 수시접수·수시환급 제도

로의 과도기적 조문으로 검토된 사항이다.(고시 제27조 요령 제13조)

- 환급차액 발생사유 통보 : 환급신청에 따른 오류제발 방지를 위하여 환급신청금액과 환급금액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감사유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고시 제28조)
- 과다 환급금의 가산금 부담경감 : 부당하게 과다 환급된 경우는 과다 환급된 금액에 환급일로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연17%의 이율을 적용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종전에는 과다 환급된 경우 과다 환급된 금액에 환급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지급지시서를 통보한 날까지의 기간동안에 대하여 체납된 부과금에 적용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다.(고시 제30조)

4. 석유부과금 제도의 향후과제

현행 석유부과금 제도에서 향후 개선될 사항중 수입부과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환급금액과 납부금액과의 연계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입부과금 납부기한 연기

- 석유를 수입하는 경우 현재도하에서는 부과금을 통관일까지 납부하던가, 납부유예 대상인 경우는 통관전까지 징수유예의 확인을 받아 통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다. 부과금 납부자로서는 통관계획의 변경으로 부과금을 납부 또는 징수유예받지 못하고 조기 통관할 경우 부과금이 체납되어 부담금의 5%인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 원유 100만바렐 수입통관시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은 약 7000만원이 되어 실무담당자로서는 업무상 Risk가 커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의견이 있다.

- 향후 수입하는 석유에 대하여 통관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부과금을 납부하도록 할 경우는 부과금 납부의무자에게는 업무의 편리성·실무자의 Risk감소·금융비용 절감 등의 혜택이 갈 수도 있다. 부과금 징수관리자는 부담금 납부건과 체납 발생건에 대한 업무량이 많아 질 것이므로, 현재의 수입통관전 세관장이 확인하는 석유수입부과금 납부 등의 확인을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한 후 납부기한을 연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환급금액과 납부금액과의 연계성

-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현재도하에서는 환급금액은 수출물량에 수출해당월의 전전월의 1개월간의 부담금납부실적을 고려한 부과금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다. ('96년 12월까지는 수출해당월의 부과금단가 적용으로 어려움이 많았음)
- 향후 석유제품의 수출에 따른 환급의 경우,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과의 연계성을 부여하였으면 한다. 석유부과금의 환급대상기관의 실무자들은 납부금액과의 연계성에 대하여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는데, 임의적인 연계성을 부여하면 현재보다도 환급시기도 빨라지며 부과금단가는 각 수입건의 단가로 대체되어 그 산정절차도 필요없게 되므로 업무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임의적인 연계성에 관한 예를 들면, '97년 2월에 수출한 물량에 대하여 '97년 1월 또는 '96년 12월에 수입한 어떤 건과 임의적으로 연계하여 환급신청할 경우 그 사실을 인정하면 된다고 본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환급대상기관은 수시접수·수시환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세입징수관은 부과금의 세입결의와 환급에 따른 세입결의 차감에 따른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명료성도 확보된다고 본다. ♣